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2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최기찬, 강석주,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남창진,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철성, 아이수루,
, 이영실, 임규호, 정준호,
홍국표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최근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으로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이처럼 서울시 인구정책에서도 중요해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 및 문화, 제도 등을 배우는 것이 필수 적임
-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언어, 문화, 사회제도 등을 이해·학습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명시(제7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수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제7조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을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를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u>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u> 및 상담 등	2. ----- ----- <u>정보제공</u> ----- ----- --
<신설>	3. <u>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u>
3. ~ 11. (생략)	4. ~ 12. (현행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u>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u>
3. <u>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u> ,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 <u>대한</u> ----- ----- -----
4. ~ 11. (생략)	5. ~ 12. (현행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u>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결혼</u>

	<u>이민자 등이 제1항제3호 및 제2 항제3호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u>
--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1항제3호	×	◦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은 현재 기시행¹⁾ 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2	제7조 제2항제3호	×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은 현재 기시행 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3	제5항	△	◦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 지원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가 곤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7조제5항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서울시 관련부서 확인결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원내용 등이 없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1)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현황

가. 2022년도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외국인주민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계	남	여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 타 외국인		
'22년	2,258,248	1,159,287	1,098,961	1,752,346	403,139	175,756	189,397	397,581	586,473	223,825	282,077
	전체외국인주민대비 51.3%	48.7%	77.6%	17.9%	7.8%	8.4%	17.6%	26.0%	9.9%	12.5%	
'21년	2,134,569	1,090,073	1,044,496	1,649,967	395,175	174,632	156,607	368,581	554,972	210,880	273,722
	전체외국인주민대비 51.1%	48.9%	77.3%	18.5%	8.2%	7.3%	17.3%	26.0%	9.9%	12.8%	
증감	123,679	69,214	54,465	102,379	7,964	1,124	32,790	29,000	31,501	12,945	8,355
	5.8%	6.3%	5.2%	6.2%	2.0%	0.6%	20.9%	7.9%	5.7%	6.1%	3.1%
서울시	442,289	197,004	245,285	360,947	43,667	31,777	66,975	105,356	113,172	45,792	35,550

※ 서울특별시 총인구('22.11.1.) 기준 대비 외국인주민현황 4.7%

나. [기시행]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교육 추진내용 ※ 서울외국인포털 (<https://global.seoul.go.kr>)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14개소) 운영을 통한 서울 거주 외국인 생활서비스 및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

①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7개소) : 특화프로그램, 어학 및 문화강좌, 문화체험프로그램, 외국인커뮤니티활동지원 등

②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 생활 및 전문상담, 교육 및 문화체험, 커뮤니티활동지원, 기타 외국인 지원 등

③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6개소) : 상담, 교육, 커뮤니티, 문화, 의료지원 등

④ 청소년글로벌 지원센터 운영

- 사업내용 :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필수 기본교육 및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의 글로벌 시민으로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 그 가족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현황
----	------------------------

- 사업내용 : 이주배경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조기 정착 도모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 :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중도입국청소년 등
- 교육기관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40개소
 - 자치구 가족센터(25개소),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1개소), 서울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1개소)
- 교육과정 : 시설 주이용자 특성, 학습수요 등에 따른 기관별 운영
- 교육실적('23년) : 197,191명
- '24년 예산액 : 1,142백만원
- 기관별 교육 현황

(2024. 7월말 기준)

교육기관	과정 수	교육인원(명)		특 징
		'23년	'24.7.	
자치구 가족센터 (25개소)	7개	100,951	52,852	-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으로 추진 - 센터별 7개 전체 과정 개설이 아닌 지역 수요를 반영한 선택적 개설·운영 - (과정)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취업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글로벌 빌리지센터 (7개소)	4개	45,010	26,001	- 교육대상자 한국어 수준에 따라 주차별(2~4회) 운영 - 연간 총 3학기(학기당 4개월 기준) 운영 - (과정) 초·중·고급 한국어 및 TOPIK 대비반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	센터별 3~4개	25,087	13,093	- 노동환경 적응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 운영 - 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주간/야간/주말 한국어 교실 운영 - 센터별 기본교육(초·중·고급 과정) 및 심화교육(관용어와 속담반) 등 운영
서울외국인주민 지원센터	6개	7,605	3,871	- 수준별 한국어 교육 운영(연간 2학기/ 학기당 4개월) - 대면 : 한국어 기초~중급 평일/ 주말 각각 1개반 - 비대면 : 한국어 능력시험대비반 (TOPIK 5-6급)
서울글로벌청소년 교육센터	9개	18,538	12,762	-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입국 초기단계 적응을 위한 임시 한국어교실 - 운영기초~중급, TOPIK 대비반, 한국어·한국문화반